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10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5나73886 손해배상(기)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2004총선시민연대
2. 사단법인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3. 광양환경운동연합
4.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5. 녹색연합
6.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7. 문화연대
8.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9. 언론개혁시민연대
10.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11. 여수 기독교청년회
12.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
13.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14.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15.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10

16. 참여자치21
 17.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18.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19. 환경운동연합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3. A
 4. B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5. C
6. D
7. E

제 131 회 제 1995년 3월 17일 개정 2004년 7월 7일자 제 770071

한국학술지인쇄

판 결 서 그 2006. 8. 16

주 목

-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에게 50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2004총선 시민연대에게 1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C :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기재와 같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 2004총선시민연대는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낙천·낙선운동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로서 2004년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존재한 단체로서 2004년 총선이 마무리된 현재에는 존재



하지 아니하는 단체이고, 원고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원고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경우 원고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원고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원고 환경운동연합의, 원고 여수 기독청년회는 소외 기독청년회의 각 하부단체로서 독립적인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내지 7, 10 내지 13, 16, 19, , 11, 갑 제13 내지 17 호증의 각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 갑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 2004년 총선시민연대의 경우 2004년 총선이 끝난 이후 총선기간 동안 발생한 재정적자 분의 처리와 이 사건 소송의 유지 등의 한정된 목적범위 안에서 존속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원고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원고 여수 기독청년회는 활동의 내용 면에서는 중앙조직과 연관이 있으나, 독자적인 정관 또는 규약을 가지고 이에 근거한 총회의 의사결정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을 두고 있고, 각 독립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결산처리 및 활동도 중앙조직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피고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10

재판장 판사 최병덕 _____

판사 이승한 _____

판사 장일혁 _____